

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
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



행복한 국민, 건강한 대한민국.
튼튼한 국민건강보험.

2025년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

2025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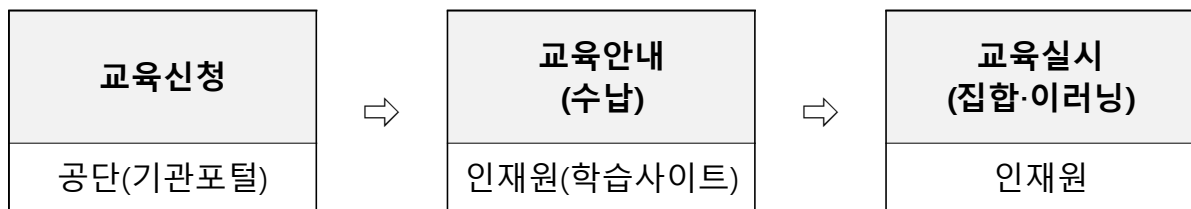
1 교육 주요사항 안내

□ 2025년 승급교육 운영

○ (운영체제)

- (국민건강보험공단)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과정 구성 등
 - (한국보건복지인재원) 승급교육 실시(교육비 수납, 수료증 발급 등)
- ※ 2025년 교육 이수자의 수료증은 인재원에서 발급, 회원 탈퇴 시 발급 불가

○ (절차)



※ 교육신청 마감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, 교육 일정,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

□ 교육 신청 절차 ... 상세 절차는 하단의 '2. 교육 신청 전산매뉴얼' 참조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(업무포털)의 승급교육 신청 화면 접속
 - (경로) [요양자원](#) → [요양보호사 승급교육](#) → [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](#)
- ①대상자를 선택하여 ②신청내용(교육생 개인정보 등)입력과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후 ④수강신청(신청가능 인원만큼 ①~③ 과정 반복)

2 교육 신청 전산매뉴얼

□ 승급교육 신청 화면 접속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
 - ①홈페이지(<https://longtermcare.or.kr>) 접속 → ②오른쪽 위 로그인 버튼 클릭 → ③장기요양기관 버튼 클릭 → ④기관기호 입력 → ⑤인증서 로그인
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(업무포털)의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화면 접속
 - 로그인 후 업무포털 접속 → ①요양자원 클릭 → ②요양보호사 승급교육 클릭 → ③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(대상연도 2025년)

□ 2025년 승급교육 신청

-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기간 이전에 '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' 화면에서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대상 및 신청가능인원 확인 가능
- 신청기간 도래 시 기관별로 확인한 교육대상 중 신청가능인원만큼 신청

1. 교육신청가능 인원 확인

- ①대상연도→②조회→③교육대상 중 교육신청인원을 선정
- ④기관에서 희망 인원만큼 신청 가능(수당은 배치 가능인원에 한하여 산정)

2. 교육대상 선택 후 신청내용 입력 란 교육일정 선택

- ①대상선택 후 화면하단 신청내용 입력 중 교육일정 조회

- 대상연도 선택 후 관할지역본부 '전체'로 선택하여 일정 조회
→ '교육일자와 교육장소를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'을 선택

- 신청내용 입력 란 중 연락처 기입

3. 교육 대상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여부 제출 후 수강신청

- 신청내용 입력란에 미기재한 내용이 없을 시, 가장 우측 부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 체크

→ 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→ ②③ '확인' 버튼 클릭

※ 동의안함 선택 시 교육 신청 불가

- 대상연도 조회 버튼 하단 ① '수강신청' 버튼 클릭

• 신청완료 시 신청자 변경 불가,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필요함

4. 교육 신청 및 이수내역 확인

-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를 조회하여 신청, 이수내역 확인
 - 교육신청 화면 옆 ①신청/이수내역에서 ②교육연도, 종사자정보 및 교육정보를 입력하고 '조회' 버튼 클릭 → ③확인할 종사자에 대해 정보 확인

5. 교육 신청 취소 방법

- 교육 신청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 내역 삭제 처리
 - 신청 화면에서 '조회' 버튼 클릭 → ①취소할 종사자 선택(클릭) → ②교육대상 항목에서 교육신청여부가 'Y'인 경우 '신청취소' 버튼 클릭
 - ※ 교육진행상태가 '교육신청'이 아닌 경우 삭제 불가

3 교육신청 및 자격 관련 [Q&A]

Q1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?

-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, 노인요양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 6개월(월 120시간 이상) 이상인 경우, 기관에서 희망하는 인원으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실제 배치 후 수당 산정은 각 시설의 배치가
능인원 수 만큼만 가능합니다.

※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
(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)제3항

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: 2명
2. 입소자 수 75명 이상: 입소자 25명마다 1명

Q2

신청한 교육대상을 취소하고 다른 인원으로 변경해서 신청하고자
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업무포털(교육신청화면)에서 기존에 신청한 대상(교육신청여부 'Y' 표시)
을 선택하여 신청취소를 누르면 신청 가능한 인원이 취소한 만큼 다른
인원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교육신청 일정이 지난 경우, 승급교육 신청대상 변경은 어렵습니다.

Q3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간은 '월 근무 기준시간'에 포함되나요?

- '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'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중 참여한 공단 주관 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은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- 집합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, 이러닝 교육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4 승급교육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승급교육 대상은 공고문이 게시되는 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고, 공고문의 신청기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마감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별도 안내를 통해 회원가입 및 교육비 수납 후 교육이 실시됩니다.

Q5 승급교육 이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집합교육과 이러닝교육 등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

- 승급교육 신청(업무포털)이 완료되면,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, 교육일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승급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(☎ 1600-8810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